

제주~칭다오 손실보전금 협정 ‘위법’ 결론

도, 中 선사와 계약 작년 10월 개통... 현재 48억 지급 정부심사 배제 논란 일자 “도 조례 근거 지원” 주장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회신... “재정 투자심사 대상”

법제처가 손실보전금 지급 조건으로 제주도와 제주~칭다오 항로 운항 선사가 맺은 협정에 대해 미리 정부로부터 타당성을 검증 받아야 하는 재정투자 심사 대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행정안전부에 이어 법제처도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체결된 ‘제주~칭다오 협정’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제주도는 더욱 궁지에 내몰렸다.

17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제처는 전날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협정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이라고 제주도에 회신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는 지자체가 각종 재정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타당성을 미리 검증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예산 지출을 허용하는 제도다.

지방재정법은 지자체의 ‘예산 외의 의무부담 행위’ 등을 투자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소요 예산이 100억원 이상일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검증할 수 없고 정부 차원의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칭다오 선사 측과 항로 개설 협정을 맺은 뒤 2024년 12월 의회 동의를 얻어 이듬해 말부터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 도는 선사 측이 화물을 확보하지 못해 ‘빈 배’로 다니는 등 손실을 보면 3년간 최대 225억원을 보전하기로 약속했으며 항로는 지난해 10월 개통됐다.

도는 그동안 손실보전금은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도가 근거로 든 조례는 ‘항만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다. 조례에

는 해상 운송 편의 증진 사업에 도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또 지방재정법은 예산 외의 의무 부담행위 중 ‘조례에 규정된 것’은 투자심사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법령 해석 주무부처인 법제처는 제주도의 이런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법제처는 “(투자심사 예외대상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은 제정 과정에서 이미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 부담할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도 조례는 해상 화물 운송 사업 등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국제항로 운항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운영비용에서 수입금액을 제외한 금액’ 등을 재정 지원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칭다오 항로 운영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경비 또는 제반 운영비용은 특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투자심사를 생략하려면 조례에 구체적인 재정 지원 대상과 범위가 명확히 명시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또 법제처는 구체적인 보전 의무는 조례를 통해 정한 것이 아니라 협정을 통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협정 체결 전에 자금 조달 능력, 재정·경제적 효율성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올해 1월 행안부도 칭다오 협정이 투자심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도는 수용하지 않고 법제처 판단까지 받아 보겠다고 손실보전금을 계속 지급해왔다.

칭다오 선사 측이 손실 없이 화

물을 운항하려면 한 번 배를 띄울 때마다 최소 220TEU(1TEU는 6m 길이 표준 컨테이너 1개)에 이르는 화물을 확보해야 하지만, 지난해 첫 취항 이래 올해 5월까지 운송한 규모는 715TEU로, 손익분기점(6820TEU)의 10.4%에 그쳤다. 턱없이 모자란 물동량에 손실 보전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난 4월 기준 48억원에 달했다.

도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당시 결과에 상관없이 무조건 수용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뚜렷한 해결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도는 같은 결론이 나올 것에 대비해 행안부에 뒤늦게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이른바 ‘사후 심사’를 검토해왔지만 전례가 없어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도 관계자는 사후심사를 실제 의뢰할 지를 묻는 질문에 “전날 늦게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를 통보 받아 현재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반짝 늘었던 제주인구 또 감소 전환 4월 36개월 만 전월비 52명 증가→ 5월 260명 감소 전체 인구 1년 새 4273명 ↓... 65세 이상 비중 20.5%

지난 4월 36개월 만에 반짝 증가했던 제주지역 주민등록인구가 5월 들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17일 국가통계포털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5월 월 도내 주민등록인구는 66만2969명으로, 4월보다 260명 감소했다. 제주 인구는 2023년 5월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지난 4월 52명 증가하며 반등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감소로 전환됐다. 출생아 수와 순유입 인구가 일정 규모 이상 늘어나지 않으면 추세적인 반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5월 주민등록인구는 1년 전과 비교해 0.6%(4273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시 인구는 48만4171명으로 0.4%(2138명) 줄었고, 서귀포시는 17만8798명으로 1.2%

(2135명) 감소했다. 연령 구조 변화도 뚜렷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3만6238명으로 전체 인구의 20.5%를 차지하면서 1년 전보다 1.1%포인트(p) 증가했다. 제주시가 9만1741명으로 전체 인구의 18.9%, 서귀포시는 4만4497명으로 24.9%를 차지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제주시는 1.0%p, 서귀포시는 1.4%p 상승했다. 반면 아동인구(0~17세)는 9만9582명으로, 1년 전보다 3.7%(3799명) 감소했다. 청년인구(19~34세)도 2.8%(3231명) 줄어든 11만719명으로 나타났다. 고령인구는 늘고 아동·청년인구는 줄면서 5월 제주지역 평균연령은 45.6세로, 1년 전(45세)보다 0.6세 높아졌다. 문미숙기자



중국 선사 측과 손실보전금 지급을 협약하고 지난해 10월 시작된 제주~칭다오 화물항로 개통식 모습. 한라일보 DB

ICMDA 세계대회 제주서 열린다

<국제기독의사치과의사회>

6월 30일~7월 5일 6일간
ICC 제주·부영수련원서
137개국서 1300여명 참가

제18회 국제기독의사치과의사회(ICMDA) 제주 세계대회가 오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6일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 제주)와 제주 부영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137개국에서 의사와 치과의사, 의과대학 학생 등 13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약 700명은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에 머물며 사전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사전 행사는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본 행사는 7월 3일부터 5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국제기독의사치과의사회는 한국 기독의사회를 비롯해 세계 107개국에서 약 6만명의 의사와 치과의사가 가입한 국제 의료인 단체다. 4년 주기로 세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26년 대회 개최지로 제주가 선정됐다.

특히 이번 대회는 저소득 국가의 젊은 의사와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국제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제주대학교병원 등 국내 선진 의료기관을 방문해 한국 의료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로 제주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와 지역 경제 파급효과는 물론 제주 의료관광과 국제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2026 제주산림문화체험 사러니쇼 에코힐링체험 개최를 축하합니다



“우리 곁에 농협이 있습니다”

막을 수는 없지만 함께 일어서고
혼자는 어렵지만 같이 헤쳐나가고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곁을 지켜주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의 가장 가까운 손길

농협은 항상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재난재해 임직원 일손돕기 1만 7천명 무이자 저리대출 8천억 원 지원(2025년) | 농협 임직원 사회공헌활동 98,370건, 786,442시간(2025년) | 고유가 물가안정을 위한 유류비 인하 3백여 원(2025년) |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가축 질병 확산 차단 | 찾아가는 농촌형 이동장터 운영 농촌 식품 사막화 해소